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34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1. 2. 5.
4. 회부일자 : 2021. 2. 9.

II. 제안이유

-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

III. 주요내용

1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08명 (7,519명 → 7,627명)
 - 본청 ·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
: 증 89명(6,967명 → 7,056명)
 -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
: 증 19명(546명 → 565명)

2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총계 증원: 증 108명 (7,519명 → 7,627명)
 - 일반직 정원 증원: 증 89명 (6,970명 → 7,059명)
 - 5급 이하 소계: 증 90명 (6,888명 → 6,978명)
 - 전문경력관 소계: 감 1명(9명 → 8명)
 - 특정직 정원 증원: 증 19명 (546명 → 565명)
 -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
: 증 19명 (496명 → 515명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[별첨 2] 참고.
3. 기 타 :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의안 [별첨 1] 참고.
 - 입법예고(2021. 1. 18. ~ 1. 22.) : 의견 없음.
 -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 -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.
 -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34호로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총액인건비¹⁾ 기준인원에 따라 현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(학교정책과-318, 2021.1.14.) 따른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규모는 6,238억 2천 1백만원으로,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상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5,635억 5천 3백만원보다 60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통보되었습니다.

-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7,059명, 교육전문직 565명 등 총 7,627명으로 책정하였는바, 현행 정원²⁾ 보다 108명이 증가한 규모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.

1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2) 총 정원 7,519명(일반직 6,967명/교육전문직 546명 등)

○ 이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의 확정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일반직은 기존 보다 89명이 증가한 7,059명으로 조정하고,³⁾ 교육전문직은 기존 보다 19명이 증가한 565명으로 조정한 것으로,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범위에 따른 인력 운영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서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3) 감소되는 전문경력관은 마포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로 현재 공로연수 중임(2021년 6월 30일자 정년).

관계 법령

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 4. 7.] [대통령령 제30601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"단위기관"이라 한다)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·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.

2. 업무의 성질·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3.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.

3의2.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4.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
5.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
3.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

4. 공립의 각급 학교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

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(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2.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별첨]

2021년 총액인건비 확정통보 내역(요약)

[행정관리담당관 조직·정원팀]

□ 지방공무원 증원: **108명** (일반직 **89명**, 특정직 **19명**)

1. 일반직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2020년 (A)	2021년			증감 (C-A)	비고
		예비통보(B)	확정통보(C)	증감(C-B)		
기준인원	6,993	7,079	7,082	3	89	
기준재정수요액	536,200,711	557,082,832	557,317,661	234,829	21,116,950	

※ 증원 내역 (총 89명: 국가정책수요 20명, 지역현안수요 18명, 자체수요 51명)

구분	내역	인원	비고
국가정책수요	교육시설관리 인력 지원	1	
	그린 스마트 미래학교	2	
	'21년 교육청 정보보호	1	
	유아 NEIS 구축·운영	2	
	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	1	
	학원 불법교육 등 점검	4	
	학교 감염병 대응	3	
	유치원 급식 관리	6	
	소계	20	
지역현안수요	코로나19 대응(상황총괄)	1	
	학교폭력 행정심판 전담인력	1	
	계약 및 물품관리 전담인력	1	
	귀국·다문화 학생 등 편입학 담당인력	3	
	과대·과밀학교 행정인력	12	
	소계	18	
자체수요	학교 신설 등	51	
	계	89	

2. 특정직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2020년 (A)	2021년			증감 (C-A)	비고
		예비통보(B)	확정통보(C)	증감(C-B)		
기준인원	537	553	556	3	19	
기준재정수요액	62,568,507	66,144,966	66,503,611	358,645	3,935,104	

※ 증원 내역 (총 19명: 국가정책수요 12명, 지역현안수요 5명, 자체수요 2명)

구분	내역	인원	비고
국가정책수요	교육정책협력관	△1	
	특수교육지원센터	1	
	고교학점제 기반조성	2	
	학교폭력 사안 심의 및 처분	3	
	그린 스마트 미래학교	3	
	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	1	
	미래형 원격수업 등 지원	3	
	소계	12	
지역현안수요	원격교육 전담인력	5	
자체수요	신규사업 인력 등	2	
계		19	